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나.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 다.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재난의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
- 나. 사회재난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사회재난 지원의 중복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생활안정지원 절차, 지급방법, 환수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미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구미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 대책본부회의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읍면동장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확정	①	②	③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유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미시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미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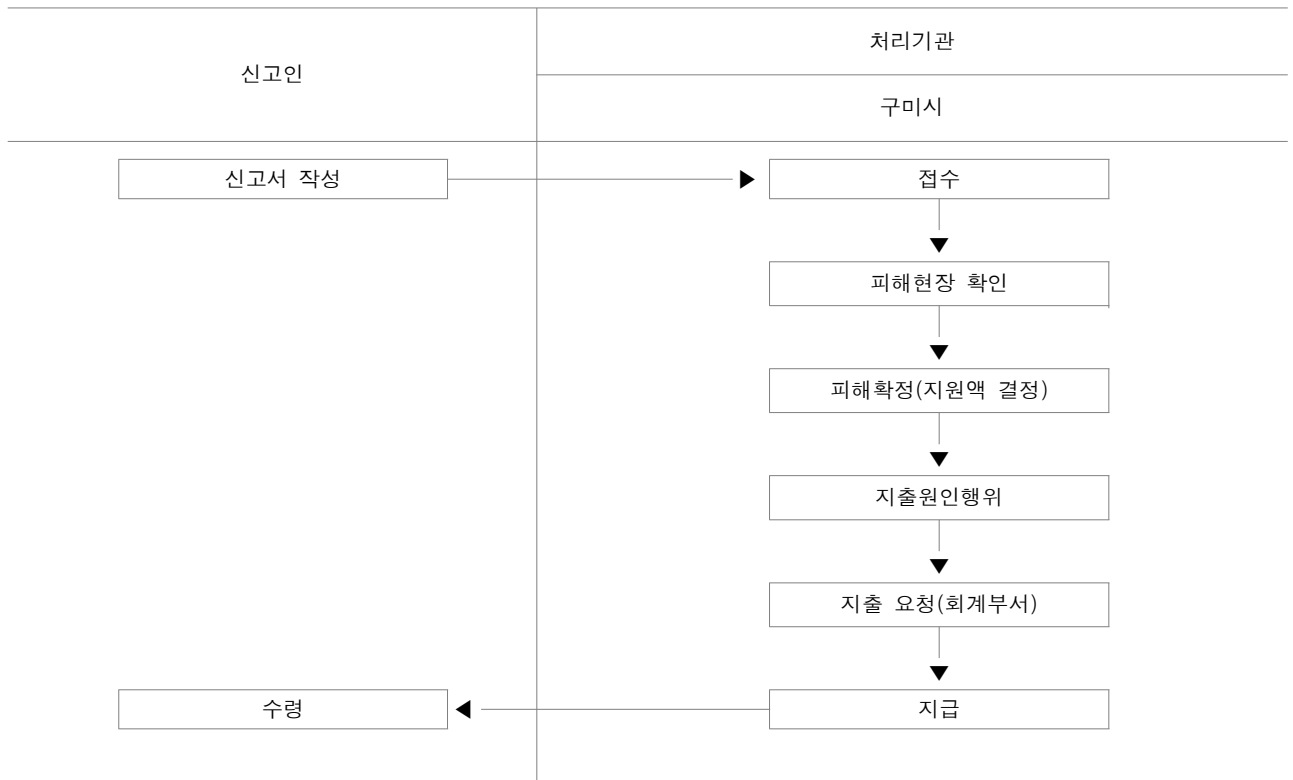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 11. 생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

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18.1.18.>

⑤ ~ ⑦ 생략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관내에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방비로 재난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공공피해 복구 등 피해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또는 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지원 등 장래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모·유형과 시기의 예측이 어려움

4. 작성자

안전재난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이혁진 (480-6738)

소관 실 · 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이 연 희
	담 당 자	이 혁 진 (480-6738)